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가단248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2. D

3. E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61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22. 11. 7. 접수 제12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는 같은 등기소 2022. 12. 6. 접수 제13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은 A와 사이에 ① 2020. 5. 19.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3. 5. 17.까지, ② 2021. 7. 9. 신용보증원금 2,7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6. 7. 9.까지로 정하여 A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A는 경기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20. 5. 19.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2021. 7. 9.

G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가) A는 2022. 11. 1. 피고 C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2. 11. 3. 접수 제155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는 2022. 11. 3. 피고 D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22. 11. 7. 접수 제120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2. 11. 1. 당시 A의 재산상황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가) A는 2022. 2. 10. 대출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였고, G은행은 2023. 1. 9.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나) 경기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4. 14. G은행에 대출원리금 25,412,960원을, 같은 달 24. F은행에 20,105,20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A의 파산 등

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은 2023. 1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A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3. 11. 1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24. 4. 29.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C의 선의 항변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이었는데, ‘제사봉행 등 목적으로 후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여야 하고 타에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 A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각 부동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붙여 A에게 증여하였는바,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조건을 위반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갑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3. 28. 아들인 A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여 2011. 3. 11.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가 2011.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H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A는 2018. 6. 2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저당권설정 등 하는 경우에는 피고 C에게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A는 202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I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별지1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1 목록 기재 3 내지 10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고 나서 곧바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까지 피고 D에게 매도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4,409,15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계약금 7,990만 원 외에 나머지 잔금이 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가 위 잔금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그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1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1 기재 3 내지 10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전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부인소송은 단지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인바, 목적물 가액의 산정시점은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4,409,15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4.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5. 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말소된 근저당권자 1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78,811,9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4. 29. 당시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85,597,226원(164,409,150원 - 78,811,924원)이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한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액수는 대위변제금 45,518,165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613,180원(= 2023. 12. 8.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45,079,455원 + 지연손해금 2,317,470원 + 가지급금 1,216,255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8,613,1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8,61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1)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2)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